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7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서천호·김예지·김선교

김상욱・안철수・조경태

최형두 • 백종헌 •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

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휴양마을사업자에게"를 "휴양마을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의 육성 및 지원) ① (생 략)	의 육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②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	<u>휴</u> 양
<u>휴양마을사업자에게</u> 농어촌체	마을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험 • 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	정하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u>사업 관련 단체에</u>
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